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464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6년 월 일 (제 회) |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충 청 북 도 지 사 |
| 제출연월일 | 2016년 9월 27일 |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6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16년 9월 2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“충북여성재단”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 - (설립목적) 여성의 경쟁력 향상,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
 - (운영재원) 도 및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, 수익금 등
- 재단의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연구·개발,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·운영 사업 등
- 임원 및 이사회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7조)
 - 이사장, 대표이사, 이사회, 감사 및 사무처 등 설치·운영
- 재단운영 및 제재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14조)
 - 사무범위, 의결절차 및 행위제한 등 책임범위 규정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, 충청북도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) 충북여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3조(재산 및 운영경비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개인·기관·단체 등의 출연금
3. 제9조에 따른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여성·가족·다문화·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·개발 사업
2.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3. 양성평등 및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
4.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
5. 여성인권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사업
6.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
7.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·협력 사업
8. 여성·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
9.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
5.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사업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임원 등)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(사무처의 설치)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고, 도

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1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여성·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시설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·감독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정)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.

제14조(재단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,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하였을 때
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
3.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채용특례) ① 재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조정되는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직원 (임기제공무원, 무기계약직근로자 등)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근로기간 및 처우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제4조(설립허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그 설립을 허가한다.

1.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
2.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
3.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,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40조(여성가족부 소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(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, 정관변경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지도·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.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명 칭 : 충북여성재단
- 주요사업 : 여성정책 연구·정책개발,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
- 추진근거 :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북여성재단 설립·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 제 비용

3. 관련조문

- 안 제8조(재정지원 등)
 -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'16년도 충북여성발전센터 예산 및 충북연구원 타당성 검토 (사업수지 예상)결과를 토대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 :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8억원 정도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충북여성재단 운영('17~'21)

- 5,798백만원(국고보조금 402, 도비보조금 5,046, 사업수입 350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여성정책관 변혜정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‘17년) | 2차년도 (‘18년) | 3차년도 (‘19년) | 4차년도 (‘20년) | 5차년도 (‘21년) | 계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 입 | 1,261,000 | 1,090,000 | 1,119,000 | 1,149,000 | 1,179,000 | 5,798,000 | |
| 국 비 | 76,000 | 78,000 | 80,000 | 83,000 | 85,000 | 402,000 | |
| 도 비 | 1,135,000 | 952,000 | 969,000 | 986,000 | 1,004,000 | 5,046,000 | |
| 기타(사업수입) | 50,000 | 60,000 | 70,000 | 80,000 | 90,000 | 350,000 | |
| 세 출 | 1,161,000 | 1,090,000 | 1,119,000 | 1,149,000 | 1,179,000 | 5,698,000 | |
| 시설비및자산취득비 | 100,000 | - | - | - | - | 100,000 | |
| 인 건 비 | 469,000 | 481,000 | 496,000 | 510,000 | 526,000 | 2,482,000 | |
| 일반운영비 | 106,000 | 88,000 | 88,000 | 91,000 | 91,000 | 464,000 | |
| 사업비 등 | 486,000 | 521,000 | 535,000 | 548,000 | 562,000 | 2,652,000 | |
| 재원 조달 | 1,261,000 | 1,090,000 | 1,119,000 | 1,149,000 | 1,179,000 | 5,798,000 |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76,000 | 78,000 | 80,000 | 83,000 | 85,000 | 402,000 |
| | 보조금 | 76,000 | 78,000 | 80,000 | 83,000 | 85,000 | 402,000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1,135,000 | 952,000 | 969,000 | 986,000 | 1,004,000 | 5,046,000 |
| | 지방세 | 1,135,000 | 952,000 | 969,000 | 986,000 | 1,004,000 | 5,046,000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 |
|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△△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△△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구·군비 | | | | | | | |
| 기 타 (사업수입 등) | 50,000 | 60,000 | 70,000 | 80,000 | 90,000 | 350,000 | |

※ 국고보조금 :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비, 기타 : 공모 및 연구용역 수입

※ ‘17년도 세출예산 : 100백만원(기본재산 적립금, 최초 출연)